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

1999. 12. 30.

건설교통부
(가칭) 호남복합물류(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2조 (정의)	2

제 2 장 기본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권리)	6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6
제5조 (소유권 귀속)	6
제6조 (출자자 변경)	6
제7조 (위험부담)	7

제 3 장 실시절차

제8조 (법인 설립기한)	7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7
제10조 (보험가입)	7
제11조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8

제 4 장 공사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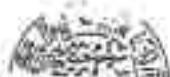
제12조 (보상업무)	8
제13조 (사업이행보증)	8
제14조 (지체상금 및 보상)	8
제15조 (공사기간)	9
제16조 (공사의 착수)	10
제17조 (공사의 도급)	10
제18조 (책임감리)	10
제19조 (공정보고)	10
제20조 (단계별 시설규모)	11
제21조 (준공확인)	11
제22조 (준공전 사용)	11

제 5 장 관리·운영

제23조 (운영개시일)	12
제24조 (사용 및 운영사항)	12
제25조 (플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제26조 (플류표준화 추진)	13
제27조 (유지관리)	13
제28조 (안전관리)	13

제 6 장 정부 지원

제29조 (정부투자 및 지원)	14
제30조 (행정절차의 추진)	14
제31조 (민원처리)	15



제 7 장 불가항력

제32조 (불가항력 사유)	15
제33조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면책)	15
제34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15
제35조 (불가항력에 대한 대책협의)	16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36조 (협약의 종료)	16
제37조 (협약의 중도해지)	16
제38조 (협약의 중도해지의 효과)	18

제 9 장 기타사항

제39조 (분쟁의 해결)	18
제40조 (비밀유지)	18
제4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19
제42조 (협약의 승계)	19
제43조 (협약의 효력)	19

붙임 자료

[붙임 1] 사 용 료	21
[붙임 2] 단계별 시설규모 및 사업비	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래에서 정의된 사업단은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1999. 12. 30.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호남권복합화물
 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합의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하되, 실시계획 승인시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사 업 량	비 고
· 부지면적	319,138평	
· 시설규모 - 화물취급장 - 배송센터 - 컨테이너작업장 - 컨테이너장치장 - 철송시설 - 기타	6동 9,008평 13동 86,954평 10동 22,780평 1식 41,355평 1식 8,514평 4,869평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 기간시설 설치 - 진입도로 - 인입철도 - 인입상수도	주출입구 : 5.2km 부출입구 : 3.6km 노 반 : 4.0km 궤 도 : 7.8km 3.6km	폭 20m 폭 20m 단 선 (내부5선 포함) 단 선 (200mm)

③ 정부는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사업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후 민간투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고려하지 못한 경제적여건 변화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투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 조 (정의)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용어는 민간투자법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 1. "감리자"라 함은 이 협약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 2. "감정평가사"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감정평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포함)등에서 이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3.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5287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 4.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5386호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 5.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6. "공사기간"이라 함은 터미널의 최초 공사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종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4868호 국가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8. "기간이익상실분"이라 함은 정부시행분지연에 따라 시설운영의 부분 또는 전면개시가 지체된 경우 정부시행분 준공일까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 손실액을 말한다.
9. "뺨쪽컨테이너기지"라 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취합·분류·장치 또는 혼재 등을 위하여 내륙에 조성된 지역으로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이 아닌 지역에 항만시설중 하역장비·하역시설·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을 갖추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장치장등 통관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기지를 말한다.
10. "대주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차입하는 자금차입 계약서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11. "물가변동비"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시점부터 준공시까지의 물가가 변동되어 생기는 금액을 말하며 설계감리비 및 공사비는 국가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근거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지수조정방법에 따르고, 설계감리비 및 공사비의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12. "물량변동비"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후 본 공사의 부분준공 및 준공시까지의 제11조 제3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이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물량이 변동되어 생기는 금액을 말한다.
13.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4.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함은 대통령령 제1622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말한다.

15. "복합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화물의 집하·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그 기능적 측면에서 동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2가지이상 운송 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16. "본 사업"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17. "부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이 협약에 따른 터미널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18. "분석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하며, 총 기간은 건설 및 운영기간을 포함하고 운영기간은 각 시설물준공 후 30년으로 한다.
19. "사업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8. 5. 18.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계획내용을 근간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수정, 보완하여 합의한 내용을 말한다.
20. "사업단"이라 함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금호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 대한통운주식회사,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세방기업주식회사, 한국토지공사, 합동운수주식회사 등이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를 대표회사로 하여 구성할 본 사업의 법인을 말한다.
21. "사업시행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 제3조의 당사자인 사업단을 말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22. "사용료"라 함은 그 결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시설, 운영설비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23.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28호(1998. 2. 6.)에 의한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 "실시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에서 정부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6. "총사업비"라 함은 터미널 건설에 소요되는 정부투자비 및 민간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산출방식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7. "터미널"이라 함은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말한다.
2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라 함은 대한민국법률 제5411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9. "수익률"이라 함은 건설비용 등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30. "협약당사자"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1. "화물수요"라 함은 실시계획에서 제시된 화물의 총수요를 말한다.
32. "화물유통촉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5160호 화물유통촉진법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3. "회계사"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공인회계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들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권리)

① 정부는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이 협약체결과 동시에 호남북합물류주식회사(본 사업단이 설립예정인 법인으로 상호는 변경될 수 있음)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정부는 민간투자법, 기타 관련법령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시설을 설계와 건설
2. 제1호의 건설을 위한 부지 및 건설된 시설물의 소유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③ 이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소유권 귀속)

이 협약 제3조제2항제2호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지 및 설치한 시설물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제 6 조 (출자자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점부터 공사완료 이전에 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사업자에게 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험부담)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실시절차

제 8 조 (법인 설립기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본 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 9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체결이후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 10 조 (보험가입)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보험에 가입하거나, 시공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① 총민간사업비는 일단 1998년 불변가 기준 393,767백만원으로 한다.
- ② 총민간사업비중 보상비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정산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
 - 2. 제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실계시 총민간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제 4 장 공사시행

제 12 조 (보상업무)

사업시행자는 부지의 매입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율은 사업시행자와 위탁받은 자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사업이행보증)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자자의 연대보증서 또는 총민간사업비(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및 부대비중 보험료 제외)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실시협약 불임2의 단계별시설규모에서 정한 단계별(1단계, 2단계)로 이행보증금을 단계별 공사착공 전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14 조 (자체상금 및 보상)

-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 불임2의



단계별 준공기일까지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실제 완공일까지 미완 공분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일당 0.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의 기산 일은 예정 완공일 익일부터 한다.

② 이 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은 연장된 완공기한 익일부터 제1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의 불임2의 단계별 준공기일까지 완공하였으나,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 정부의 귀책사유로 운영의 개시가 지체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간이익상실분과 추가발생 비용 등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지정한 회계사 등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진입도로 및 IC, 인입철도, 상수관망 개설을 정부가 지체시킨 경우
2. 제29조제2항및제3항에서 규정한 정부의 재정용지의무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다만, 위의 사항들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규모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정부에 서면으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의 총액은 총민간사업비의 10퍼센트 이하로 하고, 총민간사업비의 10퍼센트 상당금액을 초과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공사기간)

①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 및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2. 터미널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이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 16 조 (공사의 착수)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공사를 착수하여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및 보상지연으로 공사의 착수를 연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착수일을 결정한다.

2)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초 공사 개시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본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사의 도급)

1)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하도급자의 선정등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성부분중 체불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 (책임감리)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유지격감리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본 사업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정보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 공사추진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단계별 시설규모)

① 본 사업의 완공시까지의 연도별 출동량 처리시설규모의 건설은 별임2의 「단계별 시설규모 및 투자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된 출동량 처리시설 규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에 대하여 예상출동량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해산 또는 파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감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부지의 일부를 터미널 이외의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45일전까지 확정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 후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 공사준공검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을 시는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준공전 사용)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실시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 23 조 (운영개시일)

- ① 최초 운영개시일은 2004년 5월 1일로 하며, 최초 운영개시일 이후에 완공되는 잔여 시설의 운영개시일은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의 경우 운영개시일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제 24 조 (사용 및 운영사항)

- ①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의 부지 및 시설을 실시계획에서 승인받은 용도의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다.
- ②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비 설치주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사용자 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등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시설(급수, 소화, 전기 및 기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등 시설운영자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5 조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와 화물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터미널내의 화물 반출입, 입고고 상태 등 화물관련 정보를 전산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정보망과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

제 26 조 (물류표준화 추진)

- ①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내의 물류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표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및 종류별 규격
 2. 물류표준화 시설 및 장비로 설치할 수 없는 사유
 3. 설치할 시설 및 장비명, 규격
 4. 기타사항

제 27 조 (유지관리)

사업시행자는 준공후 본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신랄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28 조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부 지원

제 29 조 (정부투자 및 지원)

- ① 총사업비중 주·부 출입구까지의 진입도로 개설, 부지내 철송장, CFS, CY까지의 철도 인입 및 부지경계까지의 상수도 인입 등 기간시설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되, 사업시행자의 공정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소유 부지내에 정부가 부설한 철도인입선이 차지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무상으로 임대하며, 부지내 등 철도인입선에 대한 유지 및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되,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정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용지보상비의 전액을 정부의 재정에서 5년 거치기간 후, 1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며 보상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융자한다.
- ③ 정부는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연도별 총민간사업비의 30퍼센트를 정부의 재정으로 5년 거치기간 후 1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한 단계별 또는 매년도 자기자본금 50퍼센트 투입 및 타인자금조달 약정이 체결된 시점부터 연도별로 이루어진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은 실시계획서상의 연도별 총민간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되, 융자대상에는 총민간사업비와 매년도 증가변동비가 포함된다.

제 30 조 (행정절차의 추진)

민간투자법 제17조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이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1 조 (민원처리)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사항은 본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 7 장 불가항력

제 32 조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범위를 벗어나 사업수행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쟁, 기타 적국의 침공행위
2. 폭동, 혁명 또는 내란
3. 태풍, 대홍수, 지진, 화재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
4. 사회·산업적 총파업 (사업시행자 자체의 내부파업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극심한 원자재의 구륙난

제 33 조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면책)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34 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지속되고 그로 인하여 어느 협약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된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당해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35 조 (불가항력에 대한 대책협의)

- ① 협약당사자는 제34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사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간에 불가항력사유에 대한 사유책 또는 이 협약의 변경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37조의 협약의 종료해지 규정에 따른다.
- ③ 공시기간중 민간투자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변경 또는 다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현격하게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부에 사용료의 조정이나 재정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36 조 (협약의 종료)

- ① 이 협약은 제37조에 의하여 종료 해지되지 않는 한, 민간투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만 30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종료된 경우 정부의 부담은 종료되며,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과 책임으로 사업시행자 소유의 터미널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 37 조 (협약의 종료해지)

- 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제36조에 의한 협약의 종료이전에 이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고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4. 민간투자법 제46조의 사유중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만, 나목 및 다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유의 발생과 시정을 통지하여 이를 수렴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민간투자법 또는 등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함으로써 본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정당한 사유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게 서면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제36조에 의한 협약의 종료이전에 이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 기간내에 협약당사자간에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이 협약은 해지된다.

1. 이 협약에 따라 정부가 사용료 조정, 정부지원 사항의 적기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가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이 협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에 규정한 기간시설(즉, 진입도로, 철도인입, 상수도인입)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정부재정증자를 정부가 지체함으로써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의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 이 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전에 사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협약의 종료해지는 정부 귀책사유로 본다.

④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치유방안 및 이 협약의 변경여부 등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만족할만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제36조의 협약 종료 이전에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그 기간내에 불가항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자금차입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증도에 해지되어 사업시행자가 대출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대체할 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협약의 증도해지의 효과)

①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증도해지되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힌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금액은 협의를 원칙으로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 협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선정된 평가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협약의 증도해지의 귀책사유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겸합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회계사로 하여금 협약의 증도해지 귀책의 정도에 따른 협약당사자의 손실금액을 산정토록 하며,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금액을 협약상대방에게 지급토록 하되, 이권이 있는 경우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기타사항

제 39 조 (분쟁의 해결)

① 이 협약의 당사자는 이 협약으로부터 또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협의를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 40 조 (비밀유지)

① 이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종료여부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협약의 내용이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타방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2.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3. 정보 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 41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이 협약 내용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이 협약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 기본계획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42 조 (협약의 승계)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이 협약상의 본 사업시행자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를 승인한다.

제 43 조 (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 협약상 계약,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이 협약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고, 이 협약 체결일 이후 개정이나 있는 경우 그 개정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② 이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하기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이 실시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999. 12. 30.

대한민
건설교통부장관 이 건



(가칭) 호남복합물류주식회사
대표간사회사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지 연

